

# COUNTY OF SUFFOLK



STEVEN BELLONE

서퍽 카운티 최고 행정관 (SUFFOLK COUNTY EXECUTIVE)

보건 서비스국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JAMES L. TOMARKEN, MD, MPH, MBA, MSW  
국장(Commissioner)

2019년 2월 1일

## 서퍽 카운티 지방법 제 15-2016 호 전문 의류 세탁업소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법률

전문 의류 세탁업소 운영자님께

귀하는 서퍽 카운티에 소재한 전문 의류 세탁업소의 운영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국에서 귀하께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새로운 지방법의 시행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귀하는 앞으로 의류 세탁업소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소 내외의 지정된 위치 두 곳에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본 카운티 요구사항은 뉴욕주 게시 요구사항(6 CRR-NY 232-1.7)에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서퍽 카운티 지방자치정부 입법부에서는 지방법 15-2016호를 채택하여 서퍽 카운티 보건 서비스국(SCDHS)에 전문 의류 세탁에 쓰이는 용제를 환경 및 인체 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전문 의류 세탁업체에서 사용하는 용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게시할 표지판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지방법 전문 내용은 <https://www.ecode360.com/31229912> 참조).

이러한 표지판은 2018년 11월 20일자 서퍽 카운티 입법부의 승인을 얻었으며, 2019년 3월 1일부터는 도내 의류 세탁업소의 지정된 위치 두 곳에 반드시 해당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표지판 두 개 중 하나는 건물 바깥의 인물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유리창에 비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표지판은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눈에 잘 띄도록 계산대 근처에 비치해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세탁한 의류를 가정집 또는 사무실에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전문 의류 세탁업소에서도 의류를 세탁할 때 사용한 용제 가공법을 기재한 명세서를 영수증에 포함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이 편지에 이러한 표지판의 사본을 2부 첨부하였습니다. 표지판에서 “이 세탁업소에서 사용하는 용제” 라고 표시된 열에 귀하의 의류 세탁업소에서 사용하는 용제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국 웹사이트 <https://www.suffolkcountyny.gov/Departments/Health-Services/Garment-Cleaning-Information> 를 참조하십시오. 이 사이트에서 표지판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이 표지판을 여러 언어 버전으로도 제공하며, 지방법 전문이 게재된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도 있습니다. 본 지방법의 집행은 SCDHS 에서 담당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방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널리 알리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 말고 631-854-2501 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ames L. Tomarken, MD, MPH, MBA, MSW  
국장(Commissioner)

첨부



Public Health  
Prevent. Promote. Protect.

OFFICE OF THE COMMISSIONER  
3500 Sunrise Highway, Ste. 124, PO Box 9006, Great River, NY 11739-9006  
(631) 854-0000 Fax (631) 854-0108